



2003시행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전 재 원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행정사무관

I. 머리말

최근에는 자산소득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 각층으로부터 상속세및증여세 관련 제도를 새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사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유형별 포괄과세의 종류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대한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고자 한다.

II. 고액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1. 주식 명의개서 미이행자에 대한 증여의제

가. 개정내용 및 이유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주식 취득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명의를 신탁한 경우와 같으므로 명의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 유형에 추가하여 과세를 강화하였다.